

감 사 위 원 회

통 보

제 목 한강 야외물놀이장 안전관리 개선 필요

관 계 기 관 한강사업본부

내 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9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수영장은 수영조 수심을 0.9m 이상 2.7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심을 30cm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강공원 난지·양화물놀이장은 수영조와 물놀이가 가능한 인공개천을 갖추고 있으나, 수영조는 최대수심 0.9m 이하, 인공개천은 최대수심 50~60cm가 유지되는 시설로서 수영장이나 물놀이형 수경시설로 등록·신고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관련법에 근거한 관리·감독 시설이 아닌 관계로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로 관리·운영되고 있었다.

〔표 1〕 한강공원 야외물놀이장 운영 현황

연번	시설명	관리부서(수탁자)	운영기간	시설현황
1	난지물놀이장	한강사업본부 (●●●)	’18.6.25~9.14	- 수영조 1개소 - 입 장 정 원 : 1,100명
2	양화물놀이장	”	”	- 수영조 1개소, 인공개천 1개소 - 입 장 정 원 : 600명

이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물놀이장 안전운영을 위해 「난지·양화 물놀이장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에 수질검사, 안전요원배치 등 운영자의 안전관리 준수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수상안전요원 자격이나 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등 안전관련 규정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태였으며,

현장 점검결과 무자격 수상안전요원 배치, 수심표시안내판 미설치 등 안전관리상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표 2] 한강공원 야외물놀이장 안전관리 미흡 현황

연번	시설명	운영기간	안전관리 미흡 현황
1	한강공원 난지물놀이장	'18.6.25~9.14	- 무자격 수상안전요원 배치(수상인명구조자격증 미보유) - 수심표시안내판 설치 부적정(수영장 바닥에 설치)
2	한강공원 양화물놀이장	"	- 무자격 수상안전요원 배치(수상인명구조자격증 미보유) - 수심표시안내판 미설치(수영조 및 인공개천) - 수영조 주변 안전조치 미흡(안전펜스가 없어 추락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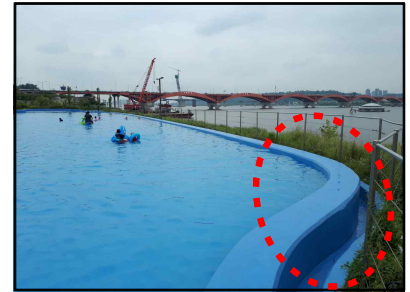
[사진 1] 한강공원 야외물놀이장 안전관리 미흡 현황사진



수심표시안내판 설치 부적정
〈난지물놀이장〉



수심표시안내판 미설치
〈양화물놀이장〉



수영조 주변 안전조치 미흡
〈양화물놀이장〉

조치할 사항

한강사업본부장은, 한강공원 난지 및 양화물놀이장에 대해 안전관리상 미흡한 사항을 보완조치 하시기 바라며, 해당 시설에 대해 수영장 시설에 준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통보)